

일자리 정책 연구 제3호

nabo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전승훈

2010. 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일자리 정책 연구 제 3 호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전승훈

2010. 8.

전승훈
경제분석실
세계분석팀 경제분석관
02-788-4664
jsh1105@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우리 경제는 상반기 7.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등 빠른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10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행정부는 ‘일자리창출 지원’을 「2010년 세계개편안」의 4대 기본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고용 관련 입법과 재정정책 수립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를 구성하여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세 번째 연구 결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노동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수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199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중대세액공제’제도 및 「2010년 세계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수요에 대한 분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요 약

1. 서론

-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조세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2. 노동수요함수 추정

- 노동수요함수 추정 및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 결과
 - 노동수요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증가할 때 감소하며, 이때 노동수요를 자본수요로 대체함에 따라 노동-자본비율 역시 감소하게 됨
 - 노동의 상대적 가격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 및 자본수요의 반응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커지고 있음
 -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시기별로 0.578% ~ 2.713%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됨
 - 노동의 상대가격(w/r)이 10% 상승할 경우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보다 저렴해진 자본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본-노동비율(K/L)은 시기별로 약 1.445% ~ 6.78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산출량 증가 시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그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점차 커지고 있음
 - 산출량 10% 증가 시 노동수요가 시기별로 약 10.959~12.586%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됨
 - 1990년대 이후 기술진보는 노동투입비율을 줄이고 자본투입비율을 높이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성격을 가짐

3.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평가

-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통한 고용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로, 이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정책임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복지원 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 중 일부만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2010년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투자조건과 고용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임
 -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루어진 후 고용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신규고용 시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보다 더 큰 액수의 노동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 사업용 자산 투자 후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의 경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무관하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에 대한 유인이라기보다는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4. 정책 시사점

- 임금보조방식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수요의 임금상승에 대한 반응은 비탄력적이어서 임금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음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주는 정책은 효과대비 비용이 아주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단,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일자리를 증가시켜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단기적으로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일자리창출로 인한 가계의 소득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에 따라 가계 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여 생산과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임
 - 그러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가계소득증가가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이 종료된 후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 노동수요에 대한 유인으로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보다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의 수혜대상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 수혜대상기업보다 많음
 -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임금보조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기업에게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노동공급 측면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이때 소득세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료 감면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가 있음

차례

I. 서론 /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내용 6
- 3. 본 연구의 구성 7

II. 노동수요함수 추정 / 9

- 1. 이론적 논의 9
- 2. 노동수요함수 추정 12
- 3. 노동수요 탄력성 측정 18

III.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평가 / 22

- 1.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2
- 2.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통한 임금보조제도 평가 24
- 3.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평가 33

IV.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35

- 1. 요약 35
- 2. 시사점 36

참고문헌 / 43

부록. 노동수요함수 추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 / 45

〈표 목차〉

[표 1]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2
[표 2]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17
[표 3]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결과: 모형 1	21
[표 4]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결과: 모형 2	21
[표 5] 주요국의 조세 감면 형태의 임금보조제도	24
[표 6] 중소기업 중 흑자법인 비중	26
[표 7] 중소기업 조세지원 활용실태	28
[표 8]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	29
[표 9]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31
[표 10]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 임금보조제도	38
[표 11] 기업체 노동비용의 구성	39
[표 12] 기업체 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의 구성	39
[표 13] 소득세 과세대상자 비율	40
[부표] 노동수요 함수추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	45

I. 서론

1. 문제제기

- 고용불안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재정을 통한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고용정책은 넓게 정의할 경우 고용 유지·안정 및 확대,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 실업자 재취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수요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요확대 정책 등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것임
 - 일자리 정책은 경제·산업·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
 - OECD에서는 직접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직업훈련, 일자리 나누기, 고용 인센티브, 장애인 통합,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조기은퇴 등 실업보험 형태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현재 6개 분야 24개 부처, 202개 사업, 9조 2천억원 규모로 추진의 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임
 - 이는 2010년 초 발표한 일자리사업(179개사업, 89,028억원)중 OECD 기준에 맞추어 R&D지원 성격 인력양성사업은 제외하고, 고용서비스·실업자 창업지원·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추가한 것임

[표 1]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사업구분	부처수 (개)	사업 개수 (개)	예산 (억원)	주요 사업내용 (부문별 부처의 일자리사업 예산비중)
합계	24	202	92,736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직접일자리 창출	18	97	30,894	희망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복지부 38%, 행안부 16%, 산림청 13%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16	41	11,676	실업자·재직자 직업훈련(재학생 제외) (고용노동부 89%, 지경부 5% 등)
고용서비스	6	32	3,896	취업지원, 패키지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등 (고용노동부 92%, 복지부 4% 등)
고용장려금	2	18	7,38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노동부 94%, 지경부 6%)
창업 지원	2	10	1,386	실업자 창업지원, 시니어 창업교육 등 (중기청 90%, 고용노동부 10%)
실업급여 등	1	4	37,497	실업급여, 체당금 지원 (고용노동부 100%)

주: 1. 사업개수는 예산과목 기준임. 단, 제주도 광특회계 4건, 농특 1건은 건수에서 제외하되 예산 67억원은 포함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신규실업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농어민훈련)

2. 고용서비스에 장애인 직접재활 및 지원고용 포함, 고용장려금에 일자리나누기 포함
자료: 안중범 외(2010)에서 인용

□ 재정지원에 의한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조세지원을 통한 고용정책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

○ 조세지원을 통한 고용정책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의 감면을 통해 세후실질임금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은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가짐

-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법인세 혹은 사업소득세 감면,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임금보조를 통한 노동비용 감소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짐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중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0조의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들 수 있음
 - 소득세 인적공제 중 부녀자 공제 역시 여성의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조세정책 중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조특법」 30조의 4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임
 - 이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상시근로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줌
-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일자리 창출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임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단, 15~29세 청년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제도임
 - 지역특구·외투기업 세제지원 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 지원한도 신설: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 이내로 설정
 - 고용인센티브 신설: 지역특구·외투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 지원

- 소기업 판단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
 - 현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5 ~ 30%)의 소기업 판단 시 제조업 100명, 축산업·건설업·여객운송업 등은 50명, 기타산업 10명 등의 인원기준 및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준을 운영 중이나,
 - 소기업 인원기준이 고용증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원 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하고자 함
-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인원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 산정 시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에 대한 계산방법을 현행 1인에서 0.5인으로 변경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상속 후 10년 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을 상속연도의 1.2배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음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
-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
 -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 100%, 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일몰연장을 2010년 말에서 2012년말로 2년 연장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여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7%) 적용함
 - 사회적기업 세액을 4년간 50% 감면해 주는 제도의 일몰을 2010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
 - 이때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등을 의미함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재정지출에 의한 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세정책에 의한 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비용효과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한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한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보다는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조세정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의 노동수요에 큰 변화를 초래함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기업의 인적자본관리체계와 노동수요 패턴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
 -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동수요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재정조세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노동수요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임
 -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음
 - Lee(2004), 심욱기(2006), 남재량(2007), 전승훈·홍인기(2009) 등은 노동공급의 세후임금탄력성을 추정
 - 김성태 등(2003); 이철인·전영준(2000); 최창곤(2008a, 2008b) 등은 거시적이고 일반균형적인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의 극대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논의하고 있음
 - 김대일(2008); 김현숙·성명재(2007); 조운영(2007); 서병선·임찬영(2004) 등은 출산과 결혼 등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의 행태적 차

이와 변화를 분석한 후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강병구(2004, 2008); 이만우·김대철(2007) 등은 근로장려세제·국민연금제도·공적이전소득 등의 복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장현준(1986), 김중수(1987), 전병유 외(2005) 등이 노동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고 있으나, 노동수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재정조세정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조세정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조세정책 중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세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지원 세제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3. 본 연구의 구성

□ 제 II장에서는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수요 구조에 대해 분석함

○ 특히 노동수요의 요소가격탄력성과 산출탄력성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 이후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의

- 제 III장에서는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 증대세액공제제도와 「2010년 세계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함

- 제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 제시

II. 노동수요함수 추정

1. 이론적 논의¹⁾

가. 노동수요의 정의 및 특징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들이 구입할 의사가 있는 노동의 양을 의미함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유발수요(derived demand)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유발수요가 의미하는 바는 노동 자체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 고용주가 노동을 수요하는 것은 노동서비스의 사용자체가 고용주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님
 -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노동을 수요하는 것은 노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생산을 행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임
 - 결국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됨
 - 이와 같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서 유발된다는 의미에서 유발수요라고 부름
- 유발수요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등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1) 이 절의 내용은 조우현(1998)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 희망근로, 사회적서비스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이들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유지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노동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단, 이들 사업은 단기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음

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의 가격, 즉, 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임금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규모효과(scale effect)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대체효과: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의 사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함
 - 규모효과: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기업이윤이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기업은 상품생산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생산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짐
 - 규모효과는 산출량효과(output effect)라고도 함
-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의 총수입이 증대되어 이윤이 증가하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함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자본서비스의 가격,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자본대신에 노동을 더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
 -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들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함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됨
- 생산기술의 향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주어진 생산량을 보다 적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킴
 - 반대로 생산기술의 향상은 생산비용을 줄여 상품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고, 보다 저렴해진 상품을 소비자들이 더 구입함에 따라 기업이윤이 높아져 노동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클지 아니면 고용창출효과가 클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시장이 경쟁적인 경우와 노동수요자가 소수인 시장에서 노동수요에는 차이가 날 수 있음

다. 조세정책과 노동수요

-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낮추는 임금보조 방식이 있음
-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추가 고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임
- 조세정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조세감면을 통해 노동비용을 감소시킬 경우
 - 노동자 사용에 따른 비용이 자본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동일한 산출량 하에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하게 됨
 - 기업의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기업이윤이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기업은 상품생산을 증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규모효과 발생
- 그러나 과거 다른 나라의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세를 통한 임금보조의 신규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임 (전병목, 2010)

2. 노동수요함수 추정

가. 추정모형²⁾

- 여기서는 노동수요함수 추정 및 탄력성 측정을 통해 각각의 요인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노동수요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금은 노동수요와 역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산출량과는 정의 관계를 가짐
 - 그런데 실제 임금과 산출량이 노동수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는 시기별,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음
- 노동수요함수의 유도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동수요함수는 (1)식과 같은 일반화된 레온티에프 (generalized Leontief: GL) 비용함수에서 유도됨

2) 본 장의 추정모형은 전병유 외(2005)의 제 2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일반화된 레온티에프 비용함수는 노동수요함수 추정에 흔히 사용되는 함수 형태임
- 생산함수가 아닌 비용함수로 접근하는 이유는 생산함수를 사용할 경우 도출되는 노동수요함수에 자본스톡이 포함되는데,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스톡에 대해서는 측정오차의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비용함수를 사용할 경우 자본스톡자료의 사용을 피할 수 있음
- (1)식에서 C 는 기업의 비용, Y 는 산출을 나타내며, p_i 는 투입 i 의 가격, t 는 시간을 각각 의미함

$$C(P, Y, t) = Y \sum_i \sum_j b_{ij} p_i^{\frac{1}{2}} p_j^{\frac{1}{2}} + Y^2 \sum_i a_i p_i + Yt \sum_i \gamma_i p_i \quad (1)$$

- 요소시장이 경쟁적이어서 기업들이 가격수용자(price-taker)로서 행동한다면 기업의 비용극소화 요소수요함수는 Shepard's lemma를 사용하여 (2)식과 같이 유도됨
 - X_i 는 요소 i 의 수요량을 의미함

$$X_i = \frac{\partial C}{\partial p_i} = \sum_j b_{ij} \left(\frac{p_j}{p_i}\right)^{\frac{1}{2}} Y + a_i Y^2 + \gamma_i Yt \quad (2)$$

- 요소수요는 (3)식과 같이 투입 산출 비율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음
 - (3)식이 본 연구에서 추정할 노동수요함수 형태임

$$\frac{X_i}{Y} = P = \sum_j b_{ij} \left(\frac{p_j}{p_i}\right)^{\frac{1}{2}} + a_i Y + \gamma_i t \quad (3)$$

- (3)식에 따르면 투입-산출 비율의 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음
 - 우변 첫째 항에 있는 (b_i/b_i) 로 표시되는 요소 상대가격의 변화
 - b_{ij} 가 모두 0이 아니라면 요소상대가격의 변화는 투입-산출 비율을 변화시킴
 - α_i 가 0이 아니면 Y 로 나타나 있는 생산규모 변화에 의해 투입-산출 비율이 변함
 - 모든 i 에 대해 v_i 의 값이 0이 아니라면 시간에 따른 기술변화에 의해 산출에 대한 요소투입 비율은 달라짐

나. 자료

- (3)식을 추정할 때 사용된 자료는 1993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종속변수로는 투입-산출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 자료가 필요함
 - 투입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조사되어 있는 전 산업 취업자수를 사용
 - 산출자료로는 국민계정 상의 실질 GDP를 사용
- 독립변수
 - 요소상대가격의 제공근임
 - 요소상대가격은 자본비용을 노동비용으로 나눈 것을 사용
 - 노동비용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舊 매월노동통계조사) 상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자료를 생산자물가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로 바꾼 후 2005년 4분기를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사용

- 자본비용으로는 회사채수익률을 2005년 4분기를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을 사용
- 실질 GDP
- 시간추세
- 분기자료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절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분기 더미자료를 포함시킴
- 외환위기 이후 시기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시기를 고려하여 외환위기 더미와 글로벌금융위기 더미를 포함시킴
- 종속변수와 실질변수의 값은 부록에 표로 제시하였음

다.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 모형의 추정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시점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모형 1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점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모형 2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 두 시점의 더미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음
 - 모형 1과 모형 2의 추정결과에서 공통된 변수의 추정결과는 유사하였음
- 요소상대가격 제곱근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가지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음
 -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의 상승할 경우, 노동투입-산출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
 - 자본과 노동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실질 GDP는 양의 부호를 가지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음
 - 생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생산규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동투입이 증가

함에 따라 노동투입 - 산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생산함수가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이하 CRS)함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임
- 만일 실질GDP의 계수값이 0이라면, Y가 증가할 때 투입-산출비율은 변화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Y와 X가 동일한 비율로 변화함을 의미함

- 시간추세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였음
 -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술진보가 노동투입-산출비율을 줄이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기술진보가 노동투입비율을 줄이고 자본투입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모형 1에서 외환위기 더미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시기까지의 노동-산출비율이 다른 시기보다 작음을 의미함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력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시사함
- 모형 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의 노동-산출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이는 고용에 비해 산출량이 더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분기더미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2]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요소상대가격의 제곱근	0.0524 *** (0.0067)	0.0467 *** (0.0078)
실질 GDP	0.0023 *** (0.0003)	0.0025 *** (0.0004)
분기더미(1분기=1)	-0.0042 (0.0061)	-0.0043 (0.0062)
분기더미(2분기=1)	0.0019 (0.0062)	0.0021 (0.0063)
분기더미(3분기=1)	0.0028 (0.0061)	0.0031 (0.0062)
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이전 더미	-0.0123 ** (0.0047)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미	- -	0.0216 ** (0.0097)
시간추세	-0.0032 *** (0.0004)	-0.0039 *** (0.0006)
<i>Adj. R</i> ²	0.9858	0.9855

주: ()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노동수요 탄력성 측정

가. 탄력성 측정방법

-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노동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 편대체탄력성, 그리고 산출탄력성 등을 계산할 수 있음
 - 노동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 즉 임금탄력성 n_{ii} 는 (4)식과 같이 계산됨

$$n_{ii} = \frac{Y \sum_{j \neq i} b_{ij} \left(\frac{p_j}{p_i} \right)^{\frac{1}{2}}}{2X_i} \quad (4)$$

- i 와 투입 j 간의 Hicks-Allen 편대체탄력성 σ_{ij} 은 (5)식과 같이 계산됨
 - 노동의 상대가격(w/r)이 상승할 경우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보다 저렴해진 자본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과 자본의 대체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Hicks-Allen의 편대체탄력성 (parti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임
 - s_j 는 투입 j 의 비용비중(cost share)으로 정의됨

$$\sigma_{ij} = \frac{\frac{Y}{2X_i} b_{ij} \left(\frac{p_j}{p_i} \right)^{\frac{1}{2}}}{s_j} \quad (5)$$

- 투입 i 의 산출 탄력성 ε_i 는 (6)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varepsilon_i = 1 + \frac{\alpha_i Y^2}{X_i} \quad (6)$$

-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1993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 전 기간의 탄력성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시기, 외환위기 이후 시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별 탄력성도 계산하였음
 - 노동수요구조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임
 - 시기별 탄력성은 노동수요함수 추정계수와 함께 탄력성 추정에 사용되는 가격지수, 산출량, 노동비용, 자본비용, 실질 GDP 등에 대한 시기별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나.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결과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1993년 이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0.1359 \sim -0.1523$, 외환위기 이전은 $-0.0578 \sim -0.0648$, 외환위기 이후는 $-0.1603 \sim -0.1798$,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0.2420 \sim -0.2713$ 으로 측정됨
 -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시기별로 0.578% ~ 2.713%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수요의 임금상승에 대한 반응은 비탄력적이어서 임금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음
 - 시기별로 살펴볼 때 최근 들어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가 커지고 있음
 - 즉,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는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점차적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정결과는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중장기 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주는 정책은 효과대비 비용이 아주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단,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일자리를 증가시켜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대체탄력성은 1993년 이후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0.3396~0.3809, 외환위기 이전 시기는 0.1445~0.1621, 외환위기 이후 시기는 0.4009~0.449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는 0.6050~0.6784로 측정됨

- 대체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입 j 의 비용비중(cost share)을 의미하는 s_j 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상 노동소득 분배율이 약 60% 수준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s_j 를 0.4로 가정하고 대체탄력성을 계산하였음
- 노동의 상대가격(u/r)이 10% 상승할 경우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보다 저렴해진 자본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본-노동 비율(K/L)은 시기별로 약 1.445%~6.78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탄력성 측정결과에 따르면 앞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과 마찬가지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대체탄력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임금상승으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경우 고용을 줄이고 자본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앞서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에서 시간추세에 대한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1990년대 이후 기술진보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노동의 상대적 비용이 상승할 때 노동을 줄이고 자본으로 대체하는 정도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임

- 산출탄력성은 1993년 이후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1596 ~ 1.1784, 외환위기 이전 시기는 1.0959 ~ 1.1072, 외환위기 이후 시기는 1.1754 ~ 1.196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는 1.2314 ~ 1.2586으로 측정됨
 - 산출량 10% 증가 시 노동수요가 시기별로 약 10.959~12.586% 증가함
 - 산출탄력성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는 부의 수요충격이 발생할 때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임금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전병유 외, 2005)

[표 3]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결과: 모형 1

	자기가격탄력성	대체 탄력성	산출탄력성
1993년 1분기~2010년 1분기	-0.1523	0.3809	1.1596
1993년 1분기 ~ 외환위기 직전	-0.0648	0.1621	1.0959
외환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0.1798	0.4495	1.17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2713	0.6784	1.2314

[표 4]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결과: 모형 2

	자기가격탄력성	대체 탄력성	산출탄력성
1993년 1분기~2010년 1분기	-0.1359	0.3396	1.1784
1993년 1분기 ~ 외환위기 직전	-0.0578	0.1445	1.1072
외환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0.1603	0.4009	1.196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2420	0.6050	1.2586

Ⅲ.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평가

1.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조세를 통한 고용정책은 주로 「조특법」 제4절의 2(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규정되어 있음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특법」 제30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 최종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조특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조특법」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 고용유지증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단, 최대 공제금액은 1,000만원임

□ 「조특법」 제30조의 4(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법인세 혹은 소득세 감면을 통해 노동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임금보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 소득세 인적공제 중 부녀자 공제 등 역시 조세를 통한 고용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2.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통한 임금보조제도 평가

-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신규 고용 시 조세감면을 통해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이러한 제도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고용창출을 위해 활용된 바 있음

[표 5] 주요국의 조세 감면 형태의 임금보조제도

	제도	도입 연도	내용
미국	NJTC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JTC에서는 고용을 전년도에 비하여 2%이상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고용 촉진 효과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상당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TJTC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수혜자, 저소득층청년, 참전용사 등을 신규고용한 기업의 법인세를 공제 - TJTC가 NJTC보다 비용효율적이며 창출된 일자리 규모도 더 크다고 지적
	WOTC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TC는 직업훈련대상자, 사회보장(AFDC 이후 TANF) 수급대상자, 참전용사, 푸드스탬프 수급자, 하계청년근로자, 보충보장수급대상자 등의 저소득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동시에 부여
캐나다	ETCP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고용 시 세액공제를 제공 - 정규 고용 인력을 초과한 추가 고용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혜택을 3년간 제공함

주 : NJTC: New Job Tax Credit, TJTC: Targeted Jobs Tax Credit, 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 ETCP: Employment Tax Credit Program
 자료: 안중범 외(2010)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정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정책의 효과는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를 노동비용을 줄이는데 활용할 경우와 기업 노동비용 변화 없이 임금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임금보조를 노동비용 감소에 사용할 경우 노동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 임금보조가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임

가. 임금보조를 기업의 노동비용 감소에 활용하는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정책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변화가 노동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함
 - 제 II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유의하지만 비탄력적으로 나타남
 - 이는 임금에 대한 보조금이 노동비용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최근 들어 노동비용 경감의 노동수요 증가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과거보다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절대적인 크기로 보면 여전히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중장기 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노동비용을 경감시켜 단기적으로 노동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서도 한계가 있음
 -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작으나마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함
 -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흑자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며, 흑자기업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중복지원 배제조항, 최저한세 등으로 인해 노동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아주 제한적임

-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흑자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임
 - 2008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수는 318,031개이며, 이중 흑자법인은 69.6%에 해당하는 221,464개 법인임
 - 따라서 전체 중소기업 중 약 30% 정도의 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표 6] 중소기업 중 흑자법인 비중

	총 신고 법인수	적자법인	흑자법인
2008년	318,031	96,567 (30.4%)	221,464 (69.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 「조특법」 제 127조의 4항 중복지원의 배제조항에 따라 이미 「조특법」에 의한 세액감면 혹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중복지원 배제조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35.8%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약 22.0%의 기업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흑자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은 중복지원배제조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이들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형태의 조세지원을 포기해야 함

[표 7] 중소기업 조세지원 활용실태

	활용비율(%)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2.0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4.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5.8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4.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세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4.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6.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8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3.8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세제	
중소기업간의 통합 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3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세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9.3
환경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2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2.8
임시투자세액공제	30.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2.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세제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2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6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	0.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5
중소기업 관련 기타 지원세제	
신용카드 POS거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0.0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5.9
결손금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에 의한 환급	15.3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35.8

주: 조사응답업체 중 각 지원제도를 실제 활용한 업체의 비율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07.12

- 흑자법인이고, 다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더라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최저한세 제도는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08년 법인세 신고를 한 중소기업 중 최저한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는 23,982개임

[표 8]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

	중소기업		
	신고법인수	수입금액	부담세액
2008년	23,982	74,290,480	230,26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노동비용 감소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유인으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임
 - 현재 구인·구직 정보의 불일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취약한 근로복지 환경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 부족인력(만명): (2008 하)15.6 → (2009 상)16.3 → (2009 하)21
 -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규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필요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이나, 고용증가가 필요하지만 그 시점을 고민하는 기업이 고용시점을 앞당기는 유인 정도로만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조특법」 상의 중복지원 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인해 고용중대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크게 줄어들게 됨
 - 따라서 고용중대세액공제제도가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 증가효과 역시 아주 제한적일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와 의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보증신청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7월과 2005년 12월 사이에 시행된 ‘고용중대특별세액공제’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안종범 외(2010)에 따르면 2004년 시행된 고용중대특별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효과는 아주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남
 - 2004년에 실시된 고용중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이외의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였음
 - 이중차분분석 등 계량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4년 당시 고용중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9]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이외의 업종
주요내용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시행시기	적용시한: 2004.7.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0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과 동일하게 적용
폐지사유	당초 취지와 달리 고용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보다 사후적 보조금에 불과하다는 평가

자료: 안중범 외(2010)에서 인용

나.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 투자, 창업등 실물지표는 점차 위기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인력난이 심각함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생산 및 설비투자는 증가세
 - 중소기업 생산지수(2005=100) : (2009.1)84.3 → (2009.3)100.0 → (2009.6)106.6 → (2009.9)111.9 → (2009.12)115.8
 - 설비투자업체 비율(%) : (2009.1)11.8 → (2009.6)16.6 → (2009.11)17.5 → (2009.12)17.3
 - 신규창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2009년 56,830개로 2003년 이후 가장 활발함
 - 신설법인수: (2003)52,739 → (2005)52,587 → (2007)53,483 →

(2009)56,830 → (2010.1)5,335(전년동기 대비 45.6% 증가)

- 수출은 세계경제 위축과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게 개선
 -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09.1)△30.4 → (2009.11)19.9 → (2009.12)31.4 → (2010.1)50.9
 - 구인·구직 정보의 불일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취약한 근로복지 환경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
 - 중소기업 부족인력(만명): (2008 하)15.6 → (2009 상)16.3 → (2009 하)21
 -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노동수요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노동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를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주는데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보임
- 이철인(2006)에 따르면 소득세 1%포인트 인상 시 대략 1%포인트 정도 경제활동참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전승훈·홍인기(2009)은 2004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 공제확대 및 소득세율 인하가 근로자의 노동공급 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연구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근로자의 가치분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공급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임
- 그러나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노동비용 절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음
-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3.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평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요

- 세액공제율 : 7%
- 투자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적용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 적용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 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청년(15세~29세)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을 한도로 함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일몰기한 : 2012.12.31

□ 예상효과

- 5,000억원 지원을 통해 약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조건과 고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장치 운용을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당 장치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음
 - 앞서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의 기술혁신은 노동절약적인 기술혁신이었으며, 이는 설비투자가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함

-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루어진 후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신규고용 시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보다 더 큰 액수의 노동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 청년고용 시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에 사회보험료, 사내 복지 등 간접노동비용을 포함할 경우 노동비용이 세액공제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실제 고용에 대한 유인이라기보다는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용 자산 투자 후 고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기업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무관하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에 대한 유인이라기보다는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조특법」 상의 중복지원 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크게 줄어들게 됨
- 결론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도 도입의 목표인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도입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IV.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조세정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노동수요함수 추정 및 노동수요의 탄력성 측정 결과
 - 노동수요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증가할 때 감소하며, 이때 노동수요를 자본수요로 대체함에 따라 노동-자본비율역시 감소하게 됨
 - 노동의 상대적 가격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 및 자본수요의 반응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커지고 있음
 - 산출량 증가 시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그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점차 커지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기술진보는 노동투입비율을 줄이고 자본투입비율을 높이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성격을 가짐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평가
 -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통한 고용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로, 이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조특법」 상의 중복지원 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줄어들게 됨
 -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고,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의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0년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투자 조건과 고용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신규고용 창출 유인을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시사점

가. 임금보조방식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수요의 임금상승에 대한 반응은 비탄력적이어서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음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시기별로 0.578% ~ 2.713% 감소하는 것을 추정됨
- 이러한 추정결과는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중장기 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주는 정책은 효과대비 비용이 아주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단,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일자리를 증가시켜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단기적으로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일자리창출로 인한 가계의 소득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에 따라 가계 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여 생산과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

조가 형성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임

-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을 것임

- 그러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가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임금보조정책이 종료된 후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나.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제도 검토 필요

□ 최근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 대신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임금보조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국가고용전략수립계획 작업반, 2010)

-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정책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음

[표 10]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 임금보조제도

	제도	도입연도	내용
벨기에	사회보장세 감면	1999	- 장기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해당 실업자가 받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감면하는 조치
	사회보장세감면	2000	- 45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년 동안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를 감면
아일랜드	사회보장세면제	2000	-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데 도움을 준 기업에게 고용주분의 사회보장세를 면제
포르투갈	사회보장세면제	1999	-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장세 면제
그리스	사회보장세감면·면제	2000	- 신규고용에 대해서 신규고용자의 연금부담금의 50%를 기업의 법인세 산정에서 소득공제 - 최저임금이하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부담금을 폐지하였고, 최저임금의 125%미만의 경우 고용주의 연금부담금을 13.33%에서 11.33%로 낮춤

자료: 안중범 외(2010)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정리

-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임금보조 방식은 조세를 통한 임금보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의 수혜대상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 수혜대상기업보다 많음
 -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임금보조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기업에게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이며,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 중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의 비중은 6.9%임

- 법정복리비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넘어섬

[표 11] 기업체 노동비용의 구성

(단위: 천원, %)

	총합	직접 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합계	퇴직 금	법정 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교육 훈련비	기타
전 규모	3,866	3,014	852	371	259	185	25	12
(비중)	100.0	78.0	22.0	9.6	6.7	4.8	0.6	0.3
300인 미만	2,960	2,371	589	231	205	141	8	4
(비중)	100.0	80.1	19.9	7.8	6.9	4.8	0.3	0.1

자료: 고용노동부, 「2009회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2010.7. 30

[표 12] 기업체 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의 구성

(단위: 천원, %)

	법정복리비					
	총합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타
전 규모	259	80	45	99	33	3
(비중)	100.0	30.8	17.4	38.3	12.6	1.0
300인 미만	205	61	41	82	21	1
(비중)	100.0	29.5	19.9	40.1	10.1	0.4

자료: 고용노동부, 「2009회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2010.7. 30

-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신규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규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방식은 전반적인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이며, 신규고용과 연계되는 방식은 즉각적인 고용수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임
- 임금보조정책은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규고용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 감면정책 검토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접근과 함께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노동공급 측면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이때 소득세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중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71.42%, 근로소득세의 경우 57.03%임

[표 13] 소득세 과세대상자 비율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A)	과세 대상자(B)	B/A	과세대상근로 소득보유자 (C)	결정세액 보유자 (D)	D/C
2005	4,369,881	2,415,102	55.27	11,868,591	6,087,750	51.29
2006	4,580,357	2,862,029	62.48	12,567,609	6,600,861	52.52
2007	4,913,387	3,194,410	65.01	13,292,795	7,732,366	58.17
2008	5,227,276	3,733,432	71.42	13,957,784	7,959,515	57.03

-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정책을 사용할 경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가 있음

참고문헌

- 강병구, 「공적 이전소득의 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사회보장연구」 20 (2) (2004), 129 ~ 150.
-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노동정책연구」 7 (4) (2007), 87 ~ 109.
- 고용노동부, 「2009회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2010.7.30
- 국가고용전략수립계획 작업반,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집」, 2010.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 김대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노동경제논집」 31 (2) (2008), 73 ~ 102.
-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 「KO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개편의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1 (1) (2003), 5 ~ 34.
- 김중수, 「고용흡수력 및 인력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개발연구, 봄, 1987, 43~67
- 김현숙·성명재,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재정포럼」 2007년 4월호, (2007), 72~75
- 나성린·남재량·문춘걸,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7 (2002), 3~25
-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서병선·임찬영,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국제경제연구」 10 (1) (2004), 141 ~ 167
- 심옥기, 「2002년 세율인하 정책을 이용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안종범·이영·우석진, 『조세·사회보험료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고용친화적 재정 운용방안』,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0.
- 이만우·김대철, 「국민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 이철인·전영준,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개편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이철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3호, 2006, 65~146
- 장현준, 「고용과 생산기술발전의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 한국개발연구, 여름호, 1986, 85~103
- 전병목,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의 역할」, 조세재정BRIEF,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전병유·남재량·신동균·최강식·이일영·조준모, 『한국의 노동수요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전승훈·홍인기,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 「노동정책연구」 9 (1), 2008, 1 ~ 43.
- 조우현, 「노동경제학 - 이론과 개혁정책」, 법문사, 1998.
- 조윤영,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 생애주기모형」.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07
- 최창곤, 「고용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구조와 조세정책」.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a.
- 최창곤,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 : 산업별 취업탄력성 비교분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b.
- Lee, Chul-In. “The Effects of the Korean Income Taxation on Labor Supply and Welfare: a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pproach Combined with IV Estimation.” *Korean Economic Review* 20 (2) (2004): 239 ~ 262.

부록. 노동수요 함수추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

[부표 1] 노동수요 함수추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

연도	분기	취업자수	이자율	실질GDP	실질임금
1993	1	18,282	12.42	70,636.9	1,310,173
	2	19,472	11.73	73,806.0	1,310,325
	3	19,648	13.58	75,875.4	1,442,212
	4	19,536	12.80	78,443.2	1,477,738
1994	1	19,088	12.16	82,604.6	1,412,401
	2	20,067	12.39	85,503.0	1,445,886
	3	20,184	13.19	88,846.3	1,579,701
	4	20,055	13.93	93,018.7	1,636,652
1995	1	19,653	15.06	96,797.6	1,508,565
	2	20,591	14.75	101,339.7	1,528,054
	3	20,740	13.43	105,105.8	1,682,083
	4	20,674	11.93	106,410.5	1,733,626
1996	1	20,043	11.88	111,296.2	1,655,523
	2	20,999	11.18	113,996.6	1,641,553
	3	21,184	12.14	116,737.9	1,838,385
	4	21,186	12.28	118,921.8	1,860,093
1997	1	20,622	12.34	120,507.7	1,782,939
	2	21,466	12.12	125,195.0	1,738,703
	3	21,498	12.11	128,321.7	1,909,738
	4	21,269	16.97	132,289.3	1,783,459
1998	1	19,697	20.71	128,387.2	1,559,315
	2	20,164	17.54	123,269.5	1,508,691
	3	19,984	12.86	124,028.7	1,564,408
	4	19,905	9.30	125,341.8	1,636,933
1999	1	19,118	8.33	131,218.7	1,705,666
	2	20,351	7.98	133,686.2	1,727,440
	3	20,706	9.62	140,070.8	1,843,489
	4	20,991	9.50	144,029.3	1,889,498
2000	1	20,380	10.09	148,379.6	1,803,451
	2	21,337	9.87	148,929.0	1,836,373
	3	21,486	9.04	152,681.3	1,960,859
	4	21,420	8.42	153,246.1	1,989,800
2001	1	20,627	7.24	159,764.3	1,955,196
	2	21,839	7.62	162,358.2	1,911,021
	3	21,900	6.61	164,864.3	2,060,845
	4	21,923	6.74	164,428.4	2,134,788

연도	분기	취업자수	이자율	실질GDP	실질임금
2002	1	21,511	7.00	175,073.6	2,166,797
	2	22,423	7.01	179,524.2	2,142,636
	3	22,416	6.29	180,877.5	2,304,765
	4	22,326	5.93	185,063.6	2,401,735
2003	1	21,633	5.39	187,714.2	2,393,748
	2	22,303	5.31	189,282.4	2,291,894
	3	22,295	5.59	191,581.0	2,460,743
	4	22,325	5.44	198,536.0	2,511,100
2004	1	22,104	5.56	202,779.2	2,389,791
	2	22,744	5.09	205,920.8	2,269,989
	3	22,647	4.42	208,354.2	2,475,610
	4	22,733	3.87	209,838.6	2,558,047
2005	1	22,247	4.41	211,509.1	2,466,274
	2	23,126	4.19	213,920.9	2,390,573
	3	23,026	4.73	218,115.3	2,570,190
	4	23,025	5.40	221,695.7	2,671,560
2006	1	22,577	5.38	223,679.1	2,586,499
	2	23,409	5.15	224,374.7	2,495,476
	3	23,314	5.11	228,564.1	2,640,929
	4	23,303	5.05	232,126.0	2,847,652
2007	1	22,841	5.27	237,683.7	2,741,826
	2	23,698	5.49	240,827.1	2,591,816
	3	23,610	5.77	244,225.0	2,825,455
	4	23,582	6.29	252,277.2	2,872,694
2008	1	23,051	6.35	256,027.5	2,736,637
	2	23,871	6.27	260,291.6	2,544,385
	3	23,752	7.19	259,550.6	2,533,630
	4	23,636	8.29	250,582.1	2,604,429
2009	1	22,904	6.85	253,301.6	2,569,780
	2	23,737	5.35	263,034.8	2,510,739
	3	23,751	5.59	271,855.4	2,605,478
	4	23,631	5.46	274,867.4	2,688,221
2010	1	23,037	5.25	283,519.8	2,656,739

일자리 정책 연구 제 3호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발 간 일 2010년 8월 30일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에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주)메이 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 (TEL 02·788·377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350-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0